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희숙 외 2명 소유물건(2025타경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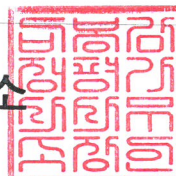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서번호: 비봉250218-100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봉 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태영

金 泰 英



감정평가액	팔억사천칠백삼십칠만칠천원 정(W847,377,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희숙 외 2명 (2025타경52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2.24	2025.02.23 ~ 2025.02.24	2025.02.25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209	토지	4,209	-	847,377,000
	이	하	여	백		
합계						W847,37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기준 및 근거

대상물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 이론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합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대상물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합니다.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4.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02월 24일로 합니다.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02월 23일 ~ 2025년 02월 24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 확인하였으며, 실지조사 내용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란 참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①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ㄱ.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ㄴ.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임료”란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합니다.

②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ㄱ.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ㄴ.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임료”란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말합니다.

ㄷ.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ㄱ.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수익가액”이란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ㄴ.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수익임료”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말합니다.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대상물건(토지 등)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규정에 따라 일괄 또는 구분하여 감정평가 합니다.

1.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산정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7. 그 밖의 사항

·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이동면 무림리 1027-2	답	1,459	답	계획 관리	세로(가)	부정형 평지	69,900	자연취락 지구
2	이동면 무림리 1027-3	답	828	답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평지	69,900	자연취락 지구
3	이동면 무림리 1030	답	1,813	답	계획 관리	세로(가)	부정형 평지	61,100	자연취락 지구
4	이동면 무림리 1034-14	답	109	답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평지	63,600	자연취락 지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합니다.

2.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경상남도 남해군]

구분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이동면 무림리 1029	답	846	답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평지	70,800	자연취락 지구

※표준지는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는 바, 이를 개별요인에서 비교하였습니다.

(2)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

-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② 실제 이용 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④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3) 선정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 상황·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A>를 선정하여 비준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점수정

구분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	계산식
비교표준지(A)	계획 관리	0.170	경상남도 남해군 (25.01.01~25.02.24) (계획관리) 2024.12.01 ~ 2024.12.31 : 0.096 $(1 + 0.00096 * 55/31)$ ≍ 1.00170

※2025년 01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인 바, 직전 월(12월)의 변동률을 연장 적용합니다.

4. 지역요인 비교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일련번호 / 비교표준지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계
1,3 / A	1.00	1.00	1.00	1.00	1.00	1.000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대등합니다.(행정적조건 : 표준지 및 대상 자연취락지구로 대등함.)						

일련번호 / 비교표준지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계
2,4 / A	0.90	1.00	1.00	1.00	1.00	0.900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등)에서 열세합니다.(행정적조건 : 표준지 및 대상 자연취락지구로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인근 평가사례, 지가수준과의 균형성을 지향하고 지가동향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대법원판례 (2007.07.12 선고 2006두11507,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2003.07.25 선고 2002두505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999.06.21 토관 58342-471, 1999.05.20 기획 0100-725)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산정방법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거래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3)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기호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지목	용도 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비고
#1	이동면 석평리 2*	답	계획관리	183,000	2023.09.01	담보	-
#2	이동면 무림리 121*	답	계획관리	163,000	2022.06.02	경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호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지목	토지면적 (㎡)	용도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a	이동면 무림리 904-*	답	667	계획관리	161,000,000	241,379	2023.03.07	답 기타
b	이동면 무림리 1160-1*	답	208	계획관리	32,800,000	157,692	2022.11.16	-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됩니다. (사정보정치 = 1.000)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 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에 위치하는 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 사례로 선정합니다.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1 비교 】

구분	소재지	단가 (원/㎡)	① 시점수정	② 지역요인	③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사례	이동면 석평리 2*	183,000	1.02318	1.000	1.100	205,966	2.904
비교표준지	이동면 무림리 1029	70,800	1.00170	-	-	70,920	
산정 내역	①시점수정	경상남도 남해군 (23.09.01~25.02.24) (계획관리) $(1 + 0.00143) * (1 + 0.00115) * (1 + 0.00135) * (1 + 0.00139) * (1 + 0.01602) * (1 + 0.00096 * 55/31)$ ≒ 1.02318					1.02318
	②지역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1.000
	③개별요인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10	1.00	1.00	1.00	1.00	1.100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합니다. (행정적조건 : 표준지 및 사례 모두 자연취락지구로 대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일련 번호	인근 유사 토지 지가수준	표준적 이용	용도지역
1~4	@150,000원/㎡ ~ 200,000원/㎡ 수준	농경지	계획관리

(7)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사례, 감정평가목적, 최근 지역의 지역동향 및 가격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비교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2.90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70,800	1.00170	1.000	1.00	2.90	205,669	206,000
2	70,800	1.00170	1.000	0.90	2.90	185,102	185,000
3	70,800	1.00170	1.000	1.00	2.90	205,669	206,000
4	70,800	1.00170	1.000	0.90	2.90	185,102	18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 및 결정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으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의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합니다.

2. 거래사례의 선정

(1)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KAIS]

기호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지목	토지면적 (㎡)	용도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a	이동면 무림리 904-*	답	667	계획관리	161,000,000	241,379	2023.03.07	답 기타
b	이동면 무림리 1160-1*	답	208	계획관리	32,800,000	157,692	2022.11.16	-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됩니다.(사정보정치 = 1.000)

(2) 선정이유

대상물건과 위치 및 물적 유사성이 있으며,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특이사항이 개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시점수정 등이 가능한 상기 거래사례[기호a]를 비교사례로 선정합니다.

3.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됩니다.(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점수정

구분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	계산식
거래사례 기호 (a)	계획 관리	2.703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남도 남해군 (23.03.07~25.02.24) (계획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 2023.03.01 ~ 2023.03.31 : 0.043 2023.04.01 ~ 2023.04.30 : 0.038 2023.05.01 ~ 2023.05.31 : 0.040 2023.06.01 ~ 2023.06.30 : 0.038 2023.07.01 ~ 2023.07.31 : 0.037 2023.08.01 ~ 2023.08.31 : 0.189 2023.09.01 ~ 2023.09.30 : 0.143 2023.10.01 ~ 2023.10.31 : 0.115 2023.11.01 ~ 2023.11.30 : 0.135 2023.12.01 ~ 2023.12.31 : 0.139 2024.01.01 ~ 2024.12.31 : 1.602 2024.12.01 ~ 2024.12.31 : 0.096 </p> <p style="text-align: center;"> $(1 + 0.00043 * 25/31) * (1 + 0.00038) * (1 + 0.00040) * (1 + 0.00038) * (1 + 0.00037) * (1 + 0.00189) * (1 + 0.00143) * (1 + 0.00115) * (1 + 0.00135) * (1 + 0.00139) * (1 + 0.01602) * (1 + 0.00096 * 55/31)$ ≒ 1.02703 </p>

※2025년 01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인 바, 직전 월(12월)의 변동률을 연장 적용합니다.

5. 지역요인 비교

대상물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개별요인 비교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일련번호 / 거래 사례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계
1,3 / a	1.00	1.00	1.00	1.00	0.88	0.880
대상물건은 사례대비 기타조건(사례: 답기타 이용 등)에서 열세합니다.						

일련번호 / 거래 사례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계
2,4 / a	0.90	1.00	1.00	1.00	0.88	0.792
대상물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기타조건(사례 : 답기타이용)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번호	거래사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241,379	1.000	1.02703	1.000	0.880	218,155	218,000
2	241,379	1.000	1.02703	1.000	0.792	196,340	196,000
3	241,379	1.000	1.02703	1.000	0.880	218,155	218,000
4	241,379	1.000	1.02703	1.000	0.792	196,340	196,000

8. 토지단가의 결정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토지단가로 결정합니다.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액(원/㎡)	결정단가(원/㎡)
1	206,000	218,000	206,000
2	185,000	196,000	185,000
3	206,000	218,000	206,000
4	185,000	196,000	18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I. 감정평가액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구분		적용단가 (원/㎡)	면적 (㎡)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1	206,000	1,459	300,554,000	-
	2	185,000	828	153,180,000	-
	3	206,000	1,813	373,478,000	-
	4	185,000	109	20,165,000	-
감정평가액				847,377,000	

2. 결정의견

상기 가격자료 및 산출근거 등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토지가액이 인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합니다.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27-2	답	계획관리지역	1,459	1,459	206,000	300,554,000	
2	"	1027-3	답	계획관리지역	828	828	185,000	153,180,000	
3	"	1030	답	계획관리지역	1,813	1,813	206,000	373,478,000	
4	"	1034-14	답	계획관리지역	109	109	185,000	20,165,000	
합 계				이	하	여	백	₩847,377,000.-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소재 '이동면사무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1) : 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상물건 2),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대상물건 3) : 북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 1) ~ 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지역(이동면)<하수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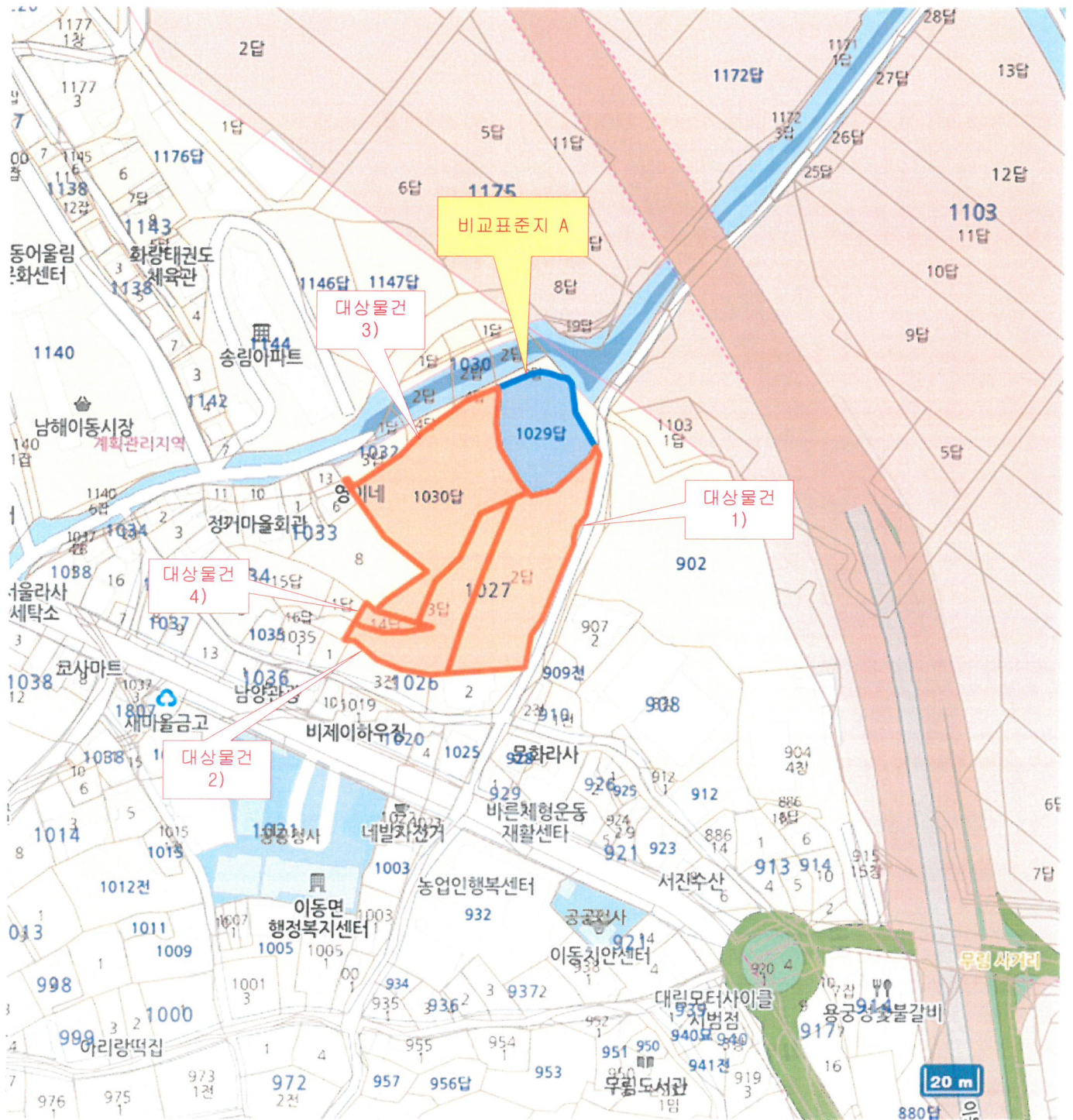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27-2 외 3필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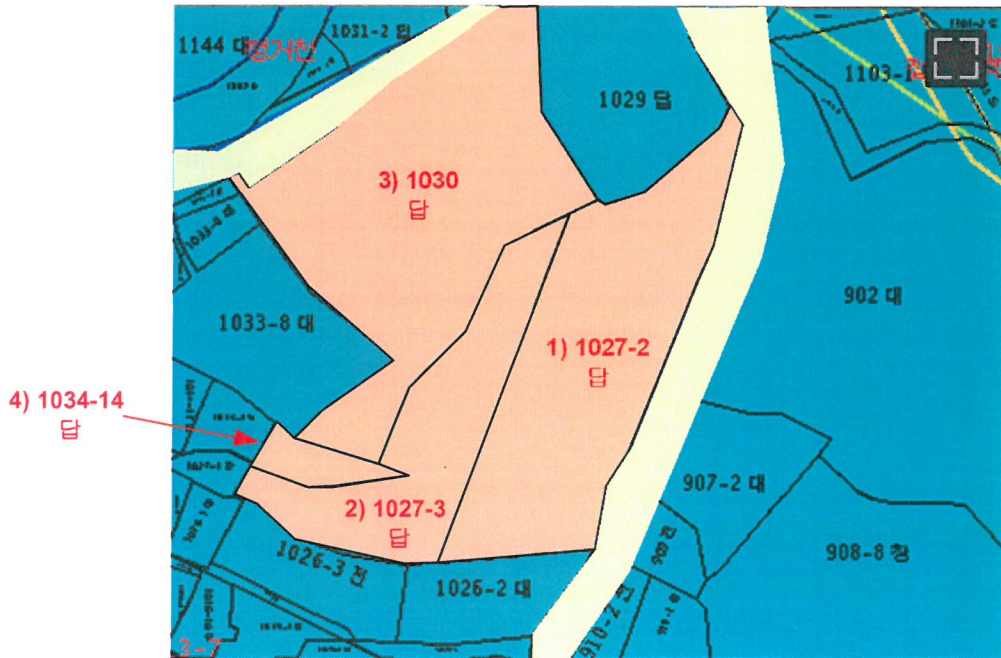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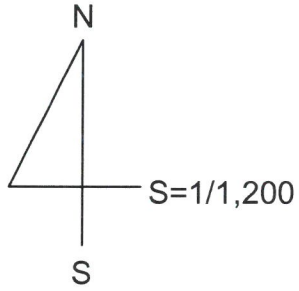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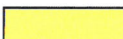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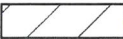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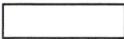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27-2 외 3필지
-----	-------------------------------



지 적 도



범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 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 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 건물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1 전경



대상물건 2 전경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3 전경



대상물건 4 전경

사 진 용 지



대상토지 기호 1)에 접한 도로



대상토지 기호3)에 접한 도로